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도종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576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0.

발 의 자:도종환・이상헌・양정숙

이병훈・최혜영・강선우

김남국 · 정청래 · 장경태

민형배 • 이재정 • 이규민

앙이원영 · 유정주 · 김승원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이 개정된 결과, 현행법은 202 2년까지 연장·시행되고 있음. 그러나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,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되므로 이 법의 한시적 규정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음.

아울러 지역신문의 경우 재직자의 근속연수가 대체로 짧은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자 함. 이를 통해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.

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재 직경력 요건을 10년으로 완화함(안 제8조제2항제3호).
- 나. 기금 부정수급자의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함 (안 제20조제3항).
- 다.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(법률 제720 6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칙 제2항 삭제).

법률 제 호

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3호 중 "15년"을 "10년"으로 한다.

제20조제3항 중 "3년간"을 "5년간"으로 한다.

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(이하 "종전의 위원회"라 한다)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종전의 위원회 위원(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촉된 경우는 제외한다)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기금 지원 배제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	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②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	②
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	
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	
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	
관이 위촉하되, 다음 각 호에	
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	
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지역신문에 <u>15년</u> 이상 재직	3 <u>10년</u>
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	
과한 인사 2명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0조(벌칙 등) ①・② (생 략)	제20조(벌칙 등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	3
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죄의	
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	
원금을 모두 환수(還收)하여야	
하고, 이러한 유죄의 확정판결	
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	
일부터 <u>3년간</u> 기금을 지원하여	<u>5년간</u>

서는 아니 된다.

④ (생 략)

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부칙

②(유효기간) 이 법은 2022년 1 <u><삭 제></u> 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부칙